

청년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감독

- 7.13.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법무법인 대륙아주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윤성원 노무사¹

1.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청년층 보호에 대한 필요성	1
2.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	2
3. 시사점	3

1. 청년층 노동권익 보호의 필요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현대의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으로 여성, 외국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년층(만 19세~34세)을 포함하고,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 윤성원 공인노무사는 해고·차별시정 등 노동위원회 사건, 임금체불·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고용노동청 사건, 노무관리 진단, 인사노무 ERP 개발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및 직무급 등 임금체계 개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

분류	내용
분야별 정기감독	①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집중, 교육 및 자가진단 활용
	②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예방 점검의 날 운영
	③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점검
수시감독	①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감독 강화
	② 지방노동별 지역에 특화된 기획감독 확대 실시
	③ 신고형 감독 확대 실시
특별감독	①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근로감독효과 제고	① 특별감독 및 기획형 수시감독 결과 공개
	②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업
	③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지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 플랫폼 기반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등 청년층의 노동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 최근,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많은 청년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해당 근로감독 결과를 살펴보고, 기업에서 청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에서 불안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연예기획사의 도급 시 충분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는 등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알려져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 동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는 총 12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총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주로 로드매니저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었으며, 특히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 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를 도입·운영 중이었으나,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사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인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주로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성실한 노사협 의,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성희롱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으며, 3개월 후 실질적 개선여부를 추 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예기획사, 패션 스타일리스트사 주요 적발사항]

연예기획사(2개사)	패션 스타일리스트사(10개사)
- 연장근로수당 16백여만원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 연장근로시간 위반 (근로기준법 제53조)	-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근로자명부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41조)
- 노사협의회 미개최 (근로자참여법 제12조)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3. 시사점

고용노동부는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에 이어, 이전부터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대형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기획 감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분야 외에도 방송 및 동영상 편집업, 음식점, 카페, 화장품 및 미용업, IT산업, 교육업, 스포츠업 등은 청년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만큼 근로감독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4대 기초노동질서로서 강조하고 있는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최저임금 준수, ③ 임금체불 예방, ④ 임금명세서 교부**를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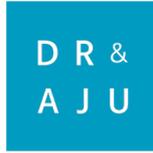
영세한 기업들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현실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ESG 경영을 위해서 청년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함께 진행된 근로여건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임금 등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받는 조직문화의 조성**을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일이나 고충, 연예인·매니저의 갑질(일반회사의 경우 고객 또는 고객사에 의한 갑질) 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의견청취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와 같은 종사자 의견청취 제도나 근로자 보호제도는 인사관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임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종사자 의견청취제도**로서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참조) 등을, **근로자 보호제도**로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참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치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참조) 등을 법적 요건과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강조되고 있고, 청년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기업의 **ESG 경영**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에서는 청년근로자의 각종 업무상 고충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복지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는 ESG 경영과 노동인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등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다수의 변호사, 노무사,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와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비하고,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오길성 소장)는 노사관계 갈등조정, 건전한 직장문화, 안전한 일터 조성, 공정채용 및 공평한 기회부여, 협력적 노동이사제 운영방안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비즈니스연속경영시스템(ISO 223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등 국내 최고의 인증 전문기관인 KSR인증원 및 노사관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의 MOU를 통해 노사문제에 대한 종합 노동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부설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오길성 전문위원
인사/노무, 국제노동, 중대재해
E oks770@draju.com
T 02-3016-8740



이승택 변호사
국가계약, 행정, 국제노동
E stlee@draju.com
T 02-3016-5291



김보훈 변호사
인사/노무
E bhkim@draju.com
T 02-3016-5206



최현준 변호사
인사/노무, 형사, 공판대응
E choihj@draju.com
T 02-3016-8769



김아름 변호사
인사/노무, 국제노동 민사
E kimar@draju.com
T 02-3016-5389



최낙현 노무사
인사/노무, 국제노동, ESG, 중대재해
E nhchoi@draju.com
T 02-3016-8716



원용일 노무사
인사/노무
E yiwon@draju.com
T 02-3016-5251



박찬욱 노무사
인사/노무, 국제노동, 중대재해
E parkcw@draju.com
T 02-3016-5325



송한봄 노무사
인사/노무, 국제노동, ESG
E hbsong@draju.com
T 02-3016-5275



윤성원 노무사
인사/노무, 중대재해
E yoonsw@draju.com
T 02-3016-5267